모의고사 지문 분석

부록

2023학년도 시즌6 제4차 이감 국어 모의고사 지문 분석을 수록하였습니다.

이 콘텐츠에 관한 저작권은 (주)이감에 있습니다.

[4~9] 사회 통합

채권자 대위권과 공유물 분할 청구권

지문 평가

(가)에서 '채권자 대위권'이 행사될 수 있는 요건을 파악하고, 그것의 핵심인 '채권 보전의 필요성'을 (나)에서 '공유물 분할 청구권'에 대해 따질 수 있어야 한다. (가)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나)에 대한 이해를 평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짜임새가 단단하면서도 명료하다. 법학 지문에서 중요시하는 여러 개념들이 등장하는 만큼 집중해서 잘 챙겨 두자.

Keyword

(가) 사회 – 법학 – 채권자 대위권
채무, 채권, 채권자 대위권, 피보전 채권, 피대위 채권, 부양 청구권, 금전 채권, 책임 재산, 무자력 상태, 특정 채권
(나) 사회 – 법학 – 공유물 분할 청구권
공유자, 공유물 분할 청구권, 공유물 분할, 현물 분할, 대금 분할, 가격 배상

(가) 문단 ① 채권자 대위권

특정 행위를 해야 할 의무인 **채무**의 불이행이 지속되어 해당 행위를 요구할 권리인 **채권**을 보전할 필요가 있을 때, 채권자는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채권자 대위권**은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직접, 혹은 재판을 통해 대신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다.

➡ '채권자 대위권'은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서[→ 채무 불이행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채권을 대신 행사하는[→ 대위하는] 것을 말한다.

맥락 짚기 법학 지문의 전형적인 흐름이다. 주어진 개념을 파악하고, 그것이 적용될 수 있는 요건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것이 관건이다.

(가) 문단 ② 피보전 채권과 피대위 채권

1) 예컨대 갑이 을에게 100만 원의 채권을, 을이 병에게 100만 원의 채권을 갖고 있으면, 갑은 을을 대위하여 병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이때 갑의 채권을 **피보전 채권**, 을의 채권을 **피대위 채권**이라 한다.

➡ '채권자 대위권'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다. 법학 지문에서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다루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 간의 관계를 분명히 정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갑, 을, 병 간의 관계를 분명히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을이 갑에 대한 채무자라면, 병은 을에 대한 채무자다. 둘을 구분하기 위해 병은 '제삼 채무자'라고 지칭하자.

- 채권자 갑 : 채무자 을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
- 채무자 을 : 채권자 갑에게 돈을 빌린 사람
- 제삼 채무자 병 : 채무자 을에게 돈을 빌린 사람[→ '제삼 채무자'에 대해서는 을이 '채권자'에 해당한다.]

➡ '피보전 채권'은 따라서 '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해 보전되어야 하는 갑의 채권을, '피대위 채권'은 갑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갑이 대신 행사하려는 을의 채권을 가리킨다.

2) 갑은 피대위 채권을 자신의 명의로 행사하고, 그 효과는 을이 행사한 것처럼 을에게 귀속된다.

➡ 헷갈리기 쉬우니 잘 챙겨 두자. 갑은 을의 채권[→ 피대위 채권]을 자신의 명의로 행사하지만, 어디까지나 그 효과는 을에게 귀속된다. 즉 병으로부터 100만 원을 받는 것은 갑이 아니라 을이다. 그 이후에 을에게 100만 원을 요구하는 식으로 갑은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게 되는 것이다.

참고 그 효과는 을에게 귀속되지만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갑이 병으로부터 직접 대금을 수령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도 있다.

3) 갑의 대위권 행사는 을의 동의 없이도 가능하지만, 을이 모르고 있다면 갑이 그 행사에 대해 통지해야 한다. 통지 이후에 을은 권리의 양도나 포기 등 처분 행위를 할 수 없지만, 대위권이 행사되기 전이라면 채권을 직접 행사하는 것이 가능하다.

➡ 갑의 입장에서는 을이 직접 자신의 채권을 행사하여 100만 원을 받으나 자신이 대위하여 100만 원이 을에게 지급되도록 하나, 차이는 없다.

(가) 문단 ③ 채권자 대위권 행사의 요건

1) 채권자 대위는 **부양 청구권**처럼 권리 주체만 행사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는 제한되며, 타인의 재산과 권리에 대한 부당한 간섭을 피하기 위해 채권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될 때에만 허용된다.

맥락 짚기 '채권자 대위권'의 행사에 필요한 요건들이다. 법학 지문에서는 지문에 등장하는 중심 개념이 적용될 수 있는 요건들을 분명히 정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요건 ❶ 피보전 채권의 채무 불이행 지속
요건 ❷ 피대위 채권이 '권리 주체'만의 권리가 아님
요건 ❸ 채권 보전의 필요성

2) 다만 법령에 그 필요성의 인정 기준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아서, 주로 판례를 참고한다.

➡ 그중에서도 ❸에 주목하고 있다. '채권 보전의 필요성'의 인정 기준을 이해하는 것이 관건이다.

3) 판례에 따르면 피보전 채권이 **'금전 채권'**인 경우, 채무 변제에 쓰일 수 있는 채무자의 재산인 **책임 재산**이 채무 변제에 부족한 **무자력 상태**일 때에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 피보전 채권[→ 채권자 갑의 채권]이 '금전 채권'이라면 채무자의 책임 재산이 부족한 때에[→ 채무자 을의 재산이 갑의 채권을 보전하기 부족한 때에]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4) 피보전 채권과 피대위 채권이 발생 원인이나 목적 측면에서 밀접하게 관련돼 있고, 다른 방법이 없어서 피보전 채권의 현실적 이행을 유효적절하게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무자력 상태가 아니어도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주목 피보전 채권이 '금전 채권'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무자력 상태'이어야 ❸이 충족된다. 다만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예외적으로' 무자력 상태가 아니어도 ❸이 충족된다는 것이다.

5) 환자를 치료한 병원이 치료비 청구권[→ 피보전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국가에 대한 환자의 배상 청구권[→ 피대위 채권]을 대위 행사하는 사례가 이에 해당한다.

➡ 채무자인 환자가 무자력 상태가 아니더라도, 이러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채권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6) 피보전 채권이 금전이 아닌 다른 특정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특정 채권'**인 경우에는 무자력 상태 여부를 고려할 필요가 없으므로, 대위권 행사가 피보전 채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지, 피보전 채권의 현실적 이행을 위한 유효적절한 수단인지의 여부만이 판단 기준이 된다.

이 콘텐츠에 관한 저작권은 (주)이감에 있습니다.

➡ 반면 피보전 채권이 '특정 채권'이라면 애초에 채무자가 무자력 상태인지를 고려하지 않는다.

➡ ❸의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 있어서 '금전 채권'의 경우와 '특정 채권'의 경우를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채권 보전의 필요성 인정 요건	
피보전 채권이 '금전 채권'	피보전 채권이 '특정 채권'
원칙 : 채무자의 무자력 상태 예외 : 피보전 채권과 피대위 채권의 관련성 + 피보전 채권의 실현을 위한 유효적절성	피보전 채권과 피대위 채권의 관련성 + 피보전 채권의 실현을 위한 유효적절성

(나) 문단 ① 공유물 분할 청구권의 대위 행사에 관한 법적 논란

1) 여러 명이 공동 소유하던 물건에 대해, **공유자**는 이를 지분에 따라 분할함으로써 공유 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다. 어떤 공유자든 일방적 의사 표시로 **공유물 분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

➡ '공유물 분할 청구권'을 행사하면 공유 관계는 종료된다. '일방적 의사 표시'로 행사될 수 있다는 점은 중요한 특징이다. 단 한 명이라도 그것을 마음대로 행사하여, 공유 관계를 종료할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2) …… 공유자의 채권자가 자기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공유물 분할 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다른 공유자들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서 부당한 간섭이 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맥락 짚기 ▼ 통합 지문을 독해할 때에는 (가)에서 이해한 내용을 능동적으로 (나)에서 떠올릴 수 있어야 한다. (가)에서 설명한 '채권자 대위권'의 행사에 필요한 요건들을 공동 소유의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따지는 것이 곧 (나)의 초점이다.

(나) 문단 ② 공유물 분할의 방법

1) **공유물 분할**은 당사자 간 협의나 재판에 의해 이루어진다. 재판에서는 판사가 제반 여건을 고려해 결정한다. 일반적으로 공유물 그대로를 분할하는 **현물 분할**을 원칙으로 하되 현물로 분할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경매를 거쳐 대금을 나누는 **대금 분할**을 한다.

➡ 원칙, 예외가 구분되었으니 의식해서 정리하자. 공유자 중 한 명이 공유물 분할 청구권을 행사하면 '공유물 분할'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중 재판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현물 분할이, 그럴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대금 분할이 이루어진다.

2) 협의에 의한 분할의 경우, 그 방법에 제한이 없다. 현물 분할과 대금 분할 외에도 공유자 중 1인이 단독 소유권을 취득하고 다른 공유자는 지분만큼의 대금을 받는 **가격 배상**도 가능하다.

➡ '재판에 의한 분할'의 경우 원칙과 예외가 존재하지만, '협의에 의한 분할'의 경우 그렇지 않다. 현물 분할, 대금 분할, 가격 배상이 전부 가능하다고 이해하면 된다.

3) 공유물 분할 청구권의 대위 행사는 대개 공유자들의 반대로 인해 협의 대신에 재판을 거친다.

➡ 현실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다.

(나) 문단 ③ 공유물 분할 청구권의 대위에 대한 판례

1) 공유물 분할 청구권을 대위하려는 채권자가 공유자를 상대로 제기한 **2015년 소송에서, 대법원**은 대위권 행사가 정당하다고 보았다. 공유물인 주택에 대해 대금 분할을 하면 피보전 채권을 유효적절하게 보전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 해당 판례에 따르면 '공유물 분할 청구권의 대위권 행사'가 가능하다. 채권자가 그것을 대신 행사하면 공유 관계가 종료되고 해당 주택이 분할되는데, 이를 통해 채권자의 채권이 보전될 수 있는 것이다.

주목 ▲ 채권자의 채권이 보전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채권 보전의 필요성, 곧 ❸의 충족이 인정되었다[(가)의 문단3-6)]. 다만 이것만으로는 피보전 채권이 '금전 채권'인지 '특정 채권'인지는 알 수 없다. 두 경우 모두 '피보전 채권을 유효적절하게 보전할 수 있다는 이유'를 근거로 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그러나 공유물이 공유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처분되는 결과를 초래해 채무자를 포함한 공유자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 채권자가 '공유물 분할 청구권'을 대위하면 나머지 공유자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공유 관계는 종료된다[문단1-1)].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비판이 제기되는 것이다.

3) 2015년 소송과 유사한 **2020년 소송의 경우 대법원**은 공유물 분할 청구권이 채권자 대위의 대상일 수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채권 보전 필요성의 부족을 이유로 대위권 행사가 불가하다고 보았다.

➡ 특이하다. 채무자가 공유자일 때 '공유물 분할 청구권'이 대위될 수 있는 것은 맞지만, ❸이 충족되지 않아서 실제로 대위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는 판례다.

➡ (가)의 문단3을 참조하여, 왜 그러한 결론을 내렸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4) 당시 대법원은 채권자가 보전하려는 권리 내용, 채무자의 무자력 상태 여부, 피보전 채권과 피대위 채권의 관련성, 채권의 실현을 위한 유효적절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분할 방법을 특정하지 않는 공유물 분할 청구권의 성격상 여러 법적 문제의 발생이 우려되므로 대위권 행사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 본래 ❸의 충족 여부에 대한 판단은 피보전 채권의 성격에 따라 달라진다. 가령 피보전 채권이 '금전 채권'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채무자의 무자력 상태'이기만 하면 ❸이 충족되는 것이다.

➡ 그런데 피대위 채권이 '공유물 분할 청구권'인 특수한 상황에서는 더 나아가 '피보전 채권과 피대위 채권의 관련성', '채권의 실현을 위한 유효적절성'까지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만 한다. ❸의 충족 여부를 보다 까다롭게 판단하는 것이다. 이는 '공유물 분할 청구권'에는 다른 공유자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 있기 때문일 것이다.

채권 보전의 필요성 인정 요건
피대위 채권이 '공유물 분할 청구권'
채무자의 무자력 상태, 피보전 채권과 피대위 채권의 관련성, 채권의 실현을 위한 유효적절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 ❸의 충족 여부를 더욱 까다롭게 판단함

(나) 문단 ④ 공유물 분할 청구권의 대위에 대한 방안

1) 2020년 판례의 경우, 공유자들의 권익 보호를 중시했다는 의미가 있으나 대위권 행사가 허용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적시되지 않아서 명확한 지침이 되기 어렵다.

이 콘텐츠에 관한 저작권은 (주)이감에 있습니다.

➡ ❸의 충족 여부를 까다롭게만 하고, 실제로 어떤 경우에 ❸이 인정되는지에 대해서는 적시하지 않았다.

2) 그래서 허용 기준을 명확히 하되, 허용하더라도 다른 대위권과 동일한 차원에서 다루어서는 안 된다는 견해가 우세하다. 다른 공유자들이 채무자 대신에 채무를 변제하여 분할을 막을 때에 혜택을 주는 등 공유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어 수단을 공유자들에게 부여하자는 주장이 제기되는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이다.

➡ 그래서 그에 맞는 대안이 필요하다는, 무난한 마무리다.

<보기> 분석

<보기> 문단

1) 은행은 X에게 담보 없이 대출을 해 주었다. X와 Y는 아파트를 각각 1/5, 4/5의 지분으로 공동 소유하고 있으며, X는 타인의 과실로 손해를 입어 손해 배상 청구권을 갖고 있는 상황이다.

➡ 은행, X, Y의 관계를 이해하자. 결국 '공유물 분할 청구권'이 대위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 채권자 은행 : 채무자 X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
- 채무자 X : 채권자 은행에게 돈을 빌린 사람
- 제삼 채무자 '타인' : 채무자 X에게 '손해 배상 채무'를 가진 사람

2) 대출금 상환 기간이 지나도 X가 대출금을 갚지 않자[→ ❶] 은행은 해당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Y에게 공유물 분할 청구를 했으나 분할 방법에 대한 이견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은행은 Y를 상대로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

➡ 즉 은행이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X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인 '공유물 분할 청구권'을 대위하려는[→ '공유물 분할 청구권'을 '피대위 채권'으로 삼으려는] 상황이다.

➡ '대위권 행사'가 가능하려면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만 한다[(가)의 문단3-1)].

요건 ❶ 피보전 채권의 채무 불이행 지속
요건 ❷ 피대위 채권이 '권리 주체'만의 권리가 아님
요건 ❸ 채권 보전의 필요성

➡ 채무자 X가 대출금을 안 갚았으므로 ❶은 충족하였다. 또한 ❷도 충족하였다. '공유물 분할 청구권'은 X만이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공유자라면 누구든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이다[(나)의 문단1-1)].

주목 ▲ 지문에서도 ❸의 충족 여부가 관건이었듯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채권 보전의 필요성'이 충분한지가 관건이다. '2015년 판례', '2020년 판례'를 참고해야 한다.

3) 이 소송에서 1심 법원은 은행의 대위권 행사가 불가하다고 판결했고, 2심 법원은 대금 분할을 명했다. 단, 아파트는 이미 다른 채권의 담보로 잡혀 있어서 X의 지분만 별도로 매각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다.

∴ '1심 법원'은 '2020년 판례'와 마찬가지로, 은행의 대위권 행사가 불가하다고 판결했다[(나)의 문단3-3)]. ❸을 충족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❸은 타인의 재산과 권리에 대한 부당한 간섭을 피하기 위해 필요한 요건이므로[(가)의 문단3-1)] ❸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공유자들의 재산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된다. 따라서 ③번 선지는 적절하다.

참고 ▼ '2020년 판례'에서 볼 수 있듯이 공유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❸의 충족 여부는 더욱 까다롭게 판단된다[(나)의 문단3-4)]. 여기서는 '공유물 분할 청구권'을 대위하지 않고, '타인에 대한 손해 배상 청구권'을 대위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유효적절성의 측면에서 특히 문제가 되었을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 반면 '2심 법원'은 '2015년 판례'와 마찬가지로 은행이 대위권 행사가 가능하다고 보았다. '대금 분할'을 명했다는 점에서도 같다[(나)의 문단3-1)].

이 콘텐츠에 관한 저작권은 (주)이감에 있습니다.

[10~13] 인문

송시열의 개혁성에 대한 재평가

지문 평가

통념과는 달리 개혁성이 뚜렷한 행보를 보인 송시열의 사상적 근거와, 실제 개혁안들을 제시하고 있다. 정확하게 읽어 내기는 다소 까다롭지만 그만큼 공부가 되는 지문이니, 꼼꼼하게 다음 분석 내용을 학습해 두자.

Keyword

인문 – 동양 철학 – 송시열

남인, 서인, 송시열, 정명론, 이일분수, 율곡 이이, 예송 논쟁, 노비종모종량법, 허적, 납포제, 양반호포법

문단 1 조선의 당쟁과 송시열의 개혁성

1) 17세기 중엽 이후 조선은 병자호란으로 말미암은 사회적 혼란과 경제적 피폐가 극심하였다. 그래서 당시에는 주자학적 통치 이념을 강화하면서 기존 정치나 사회 질서의 유지에 힘쓰려는 입장과 백성의 생활 안정을 위해 개혁을 요구하는 입장 간의 당쟁이 본격화되었다.

➡ 논의의 시대적 배경과 함께 대립하는 두 입장이 소개되고 있다. 한쪽은 기존 질서를 유지하려는 입장, 다른 한쪽은 개혁을 요구하는 입장이다. 두 입장을 구분하면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2) 흔히 이 시기에 **남인** 세력과 대립하며 **서인** 세력을 이끌었던 **송시열**을 두고 기존 질서 유지에 힘쓰려 했다고 평가하는 경향이 많았으나, 근래에는 그가 제안한 각종 정책들로 보아 남인 세력, 서인 세력을 막론하고 개혁성이 가장 뚜렷했다는 평가가 제기되고 있다.

맥락 짚기 ▼▲ 대립하는 두 입장이 각각 '남인'과 '서인[→송시열]'으로 명명되면서, 동시에 관심사가 '송시열'이라는 특정 인물로 좁혀지고 있다. 송시열의 '개혁성'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

문단 2 정명론의 '이일분수'에 대한 해석

1) 송시열은 주자학을 옹호하면서 주자학의 **정명론(正名論)**을 적극 취하였다. 군신과 부자 등 각기 그 역할에 충실해야 함을 강조하는 정명론은 일면 신분과 귀천이 나뉨을 강조하며 기존 신분 질서를 강화하는 논리로 사용되곤 한다.

➡ 송시열은 주자학의 '정명론'을 중시했다. 이는 신분 질서를 강화하는 논리로 사용되었다는 점에서, 개혁보다는 기존 질서 유지에 기여한 바가 크다.

➡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송시열을 '기존 질서 유지'에 힘쓰려 한 인물로 평가하는 경향이 많은데[문단1-2)],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 핵심이다. 우리의 관심사는 '송시열'의 개혁성에 있다. 주자학의 '정명론'을 기반으로 하되, 그로부터 어떻게 개혁성이 드러나게 되는지에 주목하자.

2) 그런데 정명론을 뒷받침하는 것은 이른바 '이치는 하나이지만 그 나뉘어 다름은 무한하다'라는 뜻의 **'이일분수(理一分殊)'**이다. 이에 대해 다름을 강조하는 해석[→분수]도 가능하지만, 사실 이는 모든 사람들에 만물의 이치인 '이(理)'가 공통적으로 내재[→이일]해 있음을 뜻한다.

주목 ▲ 정명론의 근거인 '이일분수'는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분수'에 주목하면 신분 차이 같은 인간들의 '차이점'을 강조하게 되지만, '이일'에 주목하면 신분을 초월한 인간들의 '공통점'을 강조하게 된다.

3) 다름이란 물질적 요소인 '기(氣)'의 영향을 받는 기질지성(氣質之性)에 기인한 것으로 사람마다 차등적인 역할이 있음을 보여 줄 뿐이다. 인간은 노비, 양인, 양반이 모두 [공통된 '이' 때문에] 본질적으로는 차이가 없으나, [서로 다른 '기' 때문에] 현실에서 차등적인 역할과 책임[→신분 차이]이 주어진다는 것이다.

➡ 즉 '이일분수'는 '이일'과 '분수' 중 어디에 주목하는지에 따라 정반대의 해석이 도출될 수가 있다. 주자학을 옹호하는 송시열은 '이일', '분수'를 모두 수용하되, 그중에서도 '이일'에 따라 개혁성을 드러낸 것이다.

이일분수 : 이치는 하나이지만 다름은 무한함	
이일	분수
공통된 '이'에 주목 신분을 초월한 개혁의 근거	'기'의 차이에 주목 신분 질서 강화의 근거

문단 3 예송 논쟁에 대한 송시열의 입장

1) 대사상가인 **율곡 이이**를 계승하며 이상 사회를 구현하려 한 송시열은, 이러한 관점하에 효종과 효종비의 죽음에 효종의 계모인 조대비가 상복을 얼마 동안 입어야 하는지에 관한 **예송 논쟁**에서 왕가와 민간의 상례(喪禮)를 굳이 구별하려 하지 않았다.

➡ 예송 논쟁에서 송시열의 입장을 '이일'에 주목하는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이일'에 주목하면 인간은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으므로 '왕가의 상례'와 '민간의 상례'를 굳이 구별할 이유도 없다. 즉 '왕가'와 '민간'은 차등적인 역할과 책임에 의해 구분되는 것이지, 본질적으로는 다르지 않기 때문에 굳이 '왕가의 상례'를 따로 두어 '민간의 상례'와 다르게 할 이유가 없다고 본 것이다.

2) 또한 신분을 구분 짓는 중요한 기준인 역의 부담으로 노비에게 주어지는 **노비역**과 양인에게 주어지는 **군역**이 있는데, 이들을 균등히 하는 개혁을 요구하면서 나아가 노비종모종량법과 양반호포법의 시행도 주장하였다.

맥락 짚기 ▼▲ 지문의 초점이 '역의 부담'으로 넘어가면서 '노비역'과 '군역'이 구분되고 있다. 개념들이 구분될 때에 이를 분명히 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다.

➡ 노비역과 군역을 '균등히 하는 개혁'을 요구한다는 것은 결국 역의 부담에 있어서 노비와 양인의 구분을 없애자는 뜻이다[문단2-3)]. 이것 또한 '이일'에 주목한 결과다.

문단 4 노비종모종량법

1) 율곡 이이가 제안했던 **노비종모종량법**은 어머니가 양인이면 아버지가 노비라도 자식은 양인이 되도록 하는 법이다. 송시열은 현종 10년(1669)에 이를 현종에게 간언하여 시행하도록 하였다. 이 법의 시행으로 남자 노비가 양인 부인을 얻어 자식이 양인의 신분을 얻도록 함으로써 점차 노비가 사라져 갈 것으로 기대되었다. 이는 각 백성의 집에 역 부담이 큰 노비를 줄여 자영농으로 성장할 길을 열어 주는 것이기도 하였다.

➡ '노비종모종량법'에 대한 설명이다. 아버지가 노비여도 자식이 양인일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었다는 점에서, 이는 노비와 양인의 구분을 없애려는 개혁안에 해당한다[→이일분수 중에서 '이일'에 주목한 결과다.].

2) 다만 서인이 실각하고 송시열이 유배를 가자, 시행 과정에서 드러난 일부 폐단을 문제 삼은 영의정 **허적**의 주장에 따라 숙종 4년(1678)에 폐지되었다. 허적이 이끄는 남인 세력은 '노비와 주인의 관계는 신하와 임금의 관계와 같다.'라는 명분론을 내세워 이 법에 반대하였던 것이다.

이 콘텐츠에 관한 저작권은 (주)이감에 있습니다.

➡ 송시열이 '서인'을 이끌었다면, '남인'을 이끈 것은 '허적'이다. 남인은 '명분론'을 내세워서 송시열의 개혁안에 반대하였다.

참고 여기까지의 설명을 보면 오히려 '남인'이 명분에 집착하고, '서인'이 개혁안을 적극적으로 내놓은 것처럼 느껴진다. 일반적으로 '주자학적 명분'에 주목하였다는 이유로 송시열을 비롯한 서인을 '개혁에 반대하는 입장'으로, 그에 반대하는 남인을 '개혁을 요구하는 입장'으로 단편적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 살펴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 실제의 역사를 통해 남인과 서인의 대립을 올바로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이 지문의 정수라 할 수 있다.

문단 5 양반호포법

1) 한편 당시에는 양인이 지는 군역의 문제가 심각하였다. 농사 때문에 군역을 직접 담당하지 못하는 양인은 국가에 대신 포를 납부하였고, 이를 국가가 군역을 담당하는 군인에게 나누어 주는 **납포제**가 시행되고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여러 폐단이 드러났으며 양인에게 지워진 부담도 과중하였기 때문이었다. 실제 납포제하에서는 포로 대신할 군역이 고된 정도에 따라 1필, 2필, 3필의 차이가 있었고, 노인이나 죽은 사람에게 징수되는 등의 폐단도 있었다.

➡ '노비종모종량법'은 노비의 자식이 양인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는 개혁안이었다. 그런데 '양인'의 입장에서도, 양인이라서 부담해야 하는 '군역'에 대한 문제들이 있었다[문단3-2)].

2) 이에 송시열은 양반 역시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고 보고, **양반호포법**을 주장하였다. 이는 군포를 1필로 통일시켜 농민의 부담을 줄이는 대신 양반인 사족(士族)도 군역을 부담토록 하는 것이었다.

➡ 양반호포법의 핵심은 양인의 부담을 1필로 통일시키고[→ 실질적으로 양인의 부담을 덜어 주는 것이다.] 대신 '양반'도 똑같이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주목 '노비종모종량법'과 마찬가지로 '양반호포법'도 '이일'에 주목한 입장에서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노비종모종량법'이 노비와 양인의 구분을 없애려는 개혁안이었다면, '양반호포법'은 결국 양인과 양반의 구분을 없애려는 개혁안에 해당한다.

3) 다만 재정이 부족하지 않아서 군역 부담의 명분이 없다고 보는 남인의 반대로 시행되지 못하다가 영조 대에 이르러서야 균역법의 형태로 시행될 수 있었다.

➡ 그러나 명분에 천착한 남인의 반대로 송시열의 대에서는 실제로 양반호포법이 시행되지는 못했다.

4) 이와 같은 개혁안들을 보면, 송시열은 그간의 오해와 달리 왕권이나 신분 질서의 강화보다 백성이 평안한 국가를 지향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 이렇듯 '서인'에 속한 송시열의 입장을 '기존 정치나 사회 질서의 유지에 힘쓰려는 입장'으로 단편적으로 이해해서는 곤란하다는 마무리다.

<보기> 분석

<보기> 문단

○ 갑 : 기유년에 공노비이든 사노비이든 그의 소생은 어머니의 신분을 따를 수 있다는 법[→ 노비종모종량법]이 건의될 때, 신은 앞으로 난처한 일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 진언[→ 남인 세력의 주장]하였습니다. 이제 겨우 10년 만에 그 폐단이 이와 같습니다. 노비와 그 주인 간, 즉 노주간의 소송이 분분해서 신분의 기강이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 노비의 소생이 어머니의 신분을 따를 수 있다는 법은 곧 '노비종모종량법'을 가리킨다[문단4-1)]. 갑은 그 폐단을 지적하며 반발하고 있으므로, '허적'의 주장에 해당한다[문단4-2)].

➡ 여기서 '신분의 기강이 무너지게 된 것' 또한 당시의 남인 세력이 명분론[→ 신하와 임금의 관계는 엄격히 구분되어야 하며, 그 기강이 무너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내포한다.]을 내세운 것과 맥락을 같이한다.

○ 을 : 사족에게 포를 거두는 법[→ 양반호포법]을 갑자기 시행하면 시끄러운 폐단이 뒤따를 테니, 먼저 군병 중에 죽은 사람, 노인, 약자들은 모두 군적에서 말끔히 지워 버려[→ 납포제의 폐단부터 해결] 논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어서 사족들에게 포를 거두어들이면 군역은 자연히 가벼워지고 재정도 줄어들 염려가 없을 것입니다.

➡ '양반호포법'의 필요성을 긍정하는 만큼 '송시열'과 같은 입장으로 이해하면 된다[문단5-2)]. 이러한 송시열의 개혁안은 '명분이 없다는 이유'로 실제로 시행되지 않았다.

➡ 이에 대해 을은 양반호포법의 시행에 앞서 '죽은 사람, 노인, 약자들은 모두 군적에서 말끔히 지워 버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기존의 '납포제'의 문제점 중에서는 노인이나 죽은 사람에게도 군포가 징수되는 문제점이 있었는데[문단5-1)], 그에 대한 해결 방안은 '양반호포법'에 포함되지 않았었다.

주목 죽은 사람, 노인, 약자들을 군적에서 지워 버린다면, 결과적으로 '양인의 부담'은 줄어들고 따라서 이전에 비해 거둘 수 있는 군포의 수가 줄어든다. 그렇다면 '재정도 줄어들 염려'가 발생하게 된다. 즉 '재정이 부족하지 않아서 명분이 없다고 보는 남인의 입장'이 반박되는 것이다[문단5-3)].

∴ 을이 양반호포법을 갑작스럽게 시행하지 말아야 한다고 본 것은, 실제로 시행하기에 앞서 남인 세력의 반대를 차단하기 위함이다. 양인의 부담을 덜어 주는 과정에서 실제로 재정이 줄어들 가능성이 발생하였으니, 사족에게서도 균등하게 군포를 걷어야 한다는 명분을 얻게 되는 것이다. 문단5-3)의 남인의 반대 논리를 고려했을 때 '부당한 군역 부담의 폐단이 정리될 것이라는 명분'은 이러한 설명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④번 선지는 적절하지 않다.

이 콘텐츠에 관한 저작권은 (주)이감에 있습니다.

[14~17] 기술

최대 최소 알고리즘

지문 평가

'최대 최소 알고리즘'의 원리와 과정에 대해 설명하는 전형적인 기술 지문이다. 주어진 정의를 최대한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문단4의 과정을 잘 따라가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

Keyword

기술 – 컴퓨터 과학 – 최대 최소 알고리즘

제로섬 게임, 1:1 전략 게임, 최대 최소 알고리즘, 최소 극대화 알고리즘, 트리 구조, 평가 함수, 알파 베타 가지치기

문단 1 제로섬 게임

1) 게임 참가자들이 어떤 행동을 선택하든 참가자들의 이익과 손실의 총합이 0인 게임을 **제로섬 게임**이라 한다. 바둑, 오목, 틱택토(=3×3의 칸에 정해진 기호 ○ 혹은 ×를 번갈아 두어 가로, 세로, 대각선으로 동일한 기호 3개를 나란히 두는 순간 이기는 게임) 등과 같이 두 참가자가 번갈아 두며 겨루는 **1:1 전략 게임**은 한 참가자가 '승'일 때, 다른 참가자가 '패'라는 점에서 가장 단순한 제로섬 게임으로 간주된다.

➡ '1:1 전략 게임'은 일종의 제로섬 게임에 해당한다. 누군가가 이익을 볼 때[→ '승'일 때], 상대방은 반드시 그만큼의 손실을 보기[→ '패'하기] 때문이다.

2) 인공 지능의 개발 과정에서는 1:1 전략 게임의 상황이 활용되곤 하는데, 이때 컴퓨터가 사용할 수 있는 전략으로 최대 최소 알고리즘이 있다.

맥락 짚기 지문의 초점이 주어지는 대목이다. '1:1 전략 게임'이 무엇인지를 인지한 상태에서, 컴퓨터가 '승'을 달성하기 위해 채택하는 전략으로서 '최대 최소 알고리즘'의 작동 원리를 파악하는 것이 관건이다.

문단 2 최대 최소 알고리즘의 규칙

1) **최대 최소 알고리즘**은 참가자들이 항상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선택을 하면서, 서로 협력하지 않는 적대적 관계라 가정한다.

➡ '최대 최소 알고리즘'의 기본적인 전제다. '1:1 전략 게임'의 상황에 적용하여 이해해야 한다. 여기서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한다는 것은 최종적으로 '승'을 얻기 위한 선택을 한다는 뜻이다.

➡ 또한 '적대적 관계'라는 것은 '1:1 전략 게임'의 상황에서는 당연한 일이다. 한 참가자가 '승'일 때 다른 참가자는 '패'일 수밖에 없으므로, 두 참가자가 협력할 유인은 없다.

2) 그리고 컴퓨터에게 돌아올 수 있는, 예상 가능한 손실들 중 최대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선택을 내린다는 규칙을 따른다. 컴퓨터에 이어 상대가 이익을 극대화하는 선택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의, 즉 컴퓨터에 발생하는 최악의 상황에서의 손실이 가능한 작아지도록 하는 선택을 지금 내린다는 것이다.

➡ 기본적으로 '최대 최소 알고리즘'에서 한 참가자[→ 여기서는 '컴퓨터']의 선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설명이다. 다음과 같이 이해해 보자.

> 예상 가능한 손실들[→ 상대방이 하는 선택들로 인한 손실] 중 최대의 손실[→ 상대방 입장에서는 최대의 이익이 되는 선택]을 최소화하는 선택

3) 이와 달리 손실이 아닌 이익을 기준으로 최소 이익을 극대화하는 **최소 극대화 알고리즘**도 있다. 그런데 제로섬 게임에서는 '최대 최소'나 '최소 극대화'가 사실상 동일한 결과를 낳는다.

➡ '최대 최소 알고리즘'은 '상대방'의 선택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최대의 손실'을 최소화하고자 한다. 그렇다면 반대로 '최소 극대화 알고리즘'은 '나'의 선택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최소의 이익'을 최대화하고자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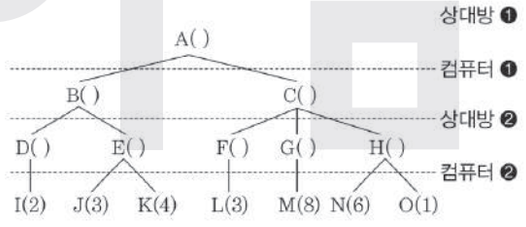
> • 최대 최소 알고리즘 : 최대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선택
> • 최소 극대화 알고리즘 : 최소의 이익을 최대화하는 선택

주목 이 둘이 '동일한 결과'를 낳음은 사실 자명한 일이다. 해당 알고리즘이 적용되는 '제로섬 게임'의 상황에서는 이익과 손실의 총합이 0이다. 바꿔 말하면 내가 100만큼의 손실을 보면 상대방은 100만큼의 이익을 본다는 뜻이다. 즉 '나의 손실'은 곧 '상대방의 이익'이 된다. 그러므로 '손실'을 기준으로 하나[→ 최대 최소], '이익'을 기준으로 하나[→ 최소 극대화] 결과는 동일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제로섬 게임에 속하는 1:1 전략 게임은 승패로 결정되니 두 전략의 결과가 동일하다는 것은 더 말할 것도 없다.

문단 3 최대 최소 알고리즘의 트리 구조

1) 최대 최소 알고리즘은 컴퓨터가 두어야 할 현시점에서 몇 수 뒤까지 경우의 수들을 **트리 구조**로 나열하고, **'평가 함수'**에 따라 트리의 말단 시점에서 얻을 컴퓨터의 점수를 계산하여 괄호 안에 넣는다. 〈그림〉은 상대방이 A를 택한 현시점에서 3수 뒤까지의 상황이다.

➡ '1:1 전략 게임' 상황에서는 컴퓨터와 상대방이 번갈아 두면서 겨루게 된다[문단1-1)]. 편의상 상대방의 첫 수부터, 이어지는 수들에 다음과 같이 번호를 매겨 보자.



〈그림〉

2) 〈그림〉에 따르면 만일 컴퓨터가 B를 택하고 이어서 상대방이 D를 택했을 때 컴퓨터는 2점인 I를 택할 것이다.

➡ 〈그림〉에 따라 이해하면 된다. '컴퓨터 ❷'의 경우 I를 제외하면 다른 수가 없기 때문에 I를 택하게 되는 것이다.

문단 4 최대 최소 알고리즘의 과정

1) 현시점에서 컴퓨터는 B와 C 중 하나를 택해야 하는데, 트리의 말단에서 역순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서 최선의 경로를 탐색한다.

➡ 구체적인 '최대 최소 알고리즘'의 작동 과정이 제시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앞서 주어진 정의인 '최대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선택'이 무엇을 가리키는지를 이 과정을 통해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문단2-2)].

2) 말단의 수들은 컴퓨터가 선택할 대상이므로, 이는 컴퓨터에게 손실이 가능한 작아지도록 가장 높은 점수를 주는 선택이어야 한다. 그래서 하위의 선택지가 하나인 D는 하위의 2점을 가져와서 D(2)가 되고, E는 J(3), K(4) 중 더 높은 4점을 가져와 E(4)가 된다. 마찬가지로 F(3), G(8), H(6)이 된다.

➡ 가장 말단인 '컴퓨터 ❷'에 대한 설명이다. 컴퓨터는 말단에서 역순으로 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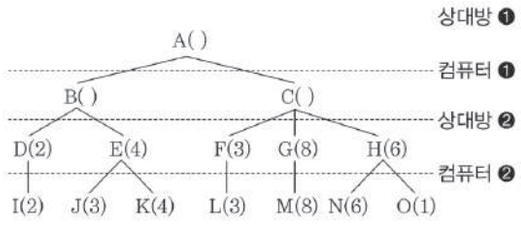
이 콘텐츠에 관한 저작권은 (주)이감에 있습니다.

슬러 올라가면서 최종적으로 가장 위인 B, C 중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 결정할 것이다.

➡ '최대 최소 알고리즘'에서 참가자들은 항상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선택을 내린다[문단2-1)]. 만약에 상대방이 E를 선택했다면, 컴퓨터는 J, K 중에서 더 높은 점수를 주는[→ 이익이 극대화되는] K를 선택할 것이라는 얘기다.

> 컴퓨터는 자신이 수를 둘 때[→ 컴퓨터 ❶, ❷]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 하는 선택을 내리므로, 가장 높은 점수를 위로 올린다.

➡ 따라서 다음과 같이 괄호들이 채워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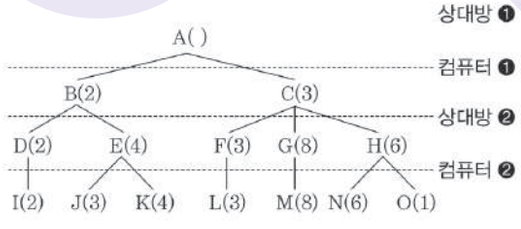
3) 그 상위의 상대방 순서에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익이 되는 선택, 즉 하위의 선택지 중 가장 낮은 점수를 취할 것이므로, 탐색 결과는 B(2), C(3)이 된다.

➡ 이번에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판단해야 한다.

주목 ▲ 컴퓨터가 아니라 상대방이 수를 두는 상황에서는 반대로 상대방의 이익이 극대화되는[→ 컴퓨터의 손실이 극대화되는] 선택을 할 것이다. '평가 함수'에 따라 부여된 점수들은 '컴퓨터의 이익'에 관한 것인 만큼 [문단3-1)], 이번에는 '가장 낮은 점수'를 위로 올려야 한다.

> 상대방은 자신이 수를 둘 때[→ 상대방 ❶, ❷]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 하는 선택을 내리므로, 가장 낮은 점수를 위로 올린다.

➡ 그래서 다음과 같이 괄호들이 채워지고, 트리 구조의 괄호들을 전부 채우게 된다[→ A의 경우에는 이미 상대방이 둔 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현시점에서 고려할 필요가 없다.].



4) 결국 현시점에서 컴퓨터는 점수가 높은 C를 택해야 하며, ……

➡ 현시점은 상대방이 A를 두고, 컴퓨터는 B, C 중 하나를 택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C를 택하게 되는 것이다.

5) …… 게임의 경로는 A−C−F−L로 예상된다.

➡ 이러한 게임의 경로는 어디까지나 '예상'이지 '확신'은 아니다. 컴퓨터와 상대방이 수를 번갈아 둘 때마다, 각자가 합리적으로 각자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수를 둘 것이라고 전제한 결과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결국 컴퓨터는 '자신이 C를 택하면 상대방은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컴퓨터의 손실을 최대화하기 위해] F를 택할 것'이라고 '예측'하는 것이다.

주목 ▲ 문단2-2)의 복잡한 설명을 다시 끌고 오자. '예상 가능한 손실'이란 B, C를 택하였을 때 결과적으로 컴퓨터의 입장에서 얻게 되는 점수들을 가리킨다. 점수가 작을수록 손실은 커진다. 컴퓨터가 B를 택하면 상대방은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컴퓨터의 손실을 최대화하기 위해] D를 택할 것이다. 즉 이것이 컴퓨터에게는 '최대의 손실'이다. 반면 컴퓨터가 C를 택하면 상대방은 마찬가지의 이유로 F를 택할 것이고 이 역시 컴퓨터에게는 '최대의 손실'에 해당한다. 컴퓨터는 그중 가장 나은 것, 즉 손실을 최소화하여 2점이 아니라 3점을 얻을 수 있는 C를 선택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최대 최소 알고리즘'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 예상 가능한 손실들 중
> 최대의 손실[→ B를 두면 2, C를 두면 3]을
> 최소화하는 선택[→ 손실이 적은, 즉 점수가 높은 C를 두는 선택]

문단 5 알파 베타 가지치기

1) 최대 최소 알고리즘은 모든 경우의 수를 찾아 일일이 고려해야 해서 탐색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알파 베타 가지치기'**를 병행할 수 있다.

맥락 짚기 ▼ 지문의 초점에 해당하는 '최대 최소 알고리즘'의 작동 원리는 이미 전부 설명된 만큼, 그것을 보완하기 위한 방법이 일종의 부가 정보로서 주어졌다.

➡ '최대 최소 알고리즘'은 문단4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트리 구조를 파악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컴퓨터나 상대방이 특정 시점에서 둘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많을수록[→ 더 많은 '괄호'들이 존재할수록] '탐색 시간'은 길어질 수밖에 없다.

2) 이는 컴퓨터의 선택지이기 때문에 가장 높은 점수를 찾아야 할 때, 그보다 낮은 점수를 지닌 선택지의 하위를 제외하는 것이다. 가령 N(6), O(1) 중에서 높은 점수를 택해야 하므로 O의 하위에 놓일 선택지들은 앞으로 트리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 컴퓨터 ❶, ❷에서는 컴퓨터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선택을 해야 하므로, 가장 높은 점수를 가져와야 한다[문단4-2)]. 달리 말하면 '가장 높은 점수'가 아니라면 고려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 따라서 '알파 베타 가지치기'는 컴퓨터의 입장에서는 가장 높은 점수가 아닌 '나머지 경우의 수'를 제거한다. 이를 통해 탐색 시간을 줄일 수 있는 것이다.

3) 상대방의 선택지여서 가장 낮은 점수를 찾아야 할 때에는 그보다 높은 점수를 지닌 선택지의 하위를 제외할 수 있다.

➡ 반대로 상대방 ❶, ❷에서는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선택을 해야 하므로, 가장 낮은 점수를 가져와야 한다[문단4-3)]. 달리 말하면 '가장 낮은 점수'가 아니라면 고려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 따라서 '알파 베타 가지치기'는 컴퓨터의 입장인지 상대방의 입장인지에 따라 방식이 달라진다.

> • 컴퓨터의 차례 : 점수가 낮은 경우의 수 제거 ⇨ 탐색 시간↓
> • 상대방의 차례 : 점수가 높은 경우의 수 제거 ⇨ 탐색 시간↓

<보기> 분석

<보기>문단

1) 다음은 최대 최소 알고리즘에 따라 컴퓨터가 ×, 상대방이 ○를 두는 틱택토에서 상대방이 ㉮를 둔 후 컴퓨터가 마련한 트리 구조이다. 동일한 기호 3개를 나란히 두는 시점에는 게임이 곧바로 종료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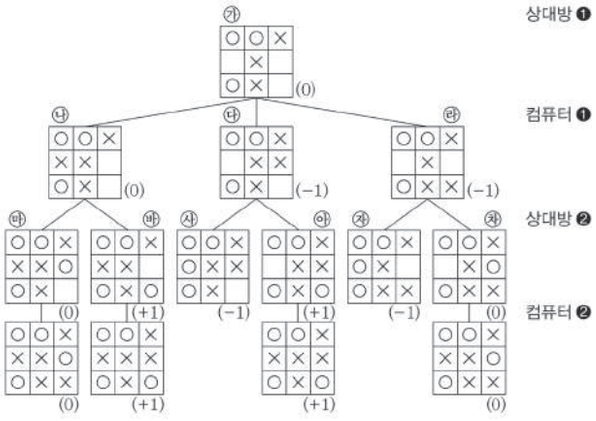
맥락 짚기 ▼ 1:1 전략 게임에 해당하는 틱택토를 하는 상황이다[문단1-1)]. 지문에서 다룬 '최대 최소 알고리즘'에 따라 트리 구조의 괄호들이 어떻게 채워지는지를 파악하면 된다.

2) 평가 함수에 따르면 컴퓨터가 이길 때 +1점, 비길 때 0점, 질 때 −1점을 부여한다.

➡ 컴퓨터 ❷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위로 올려야 하지만[문단4-2)], 여기서는 각각의 경로에 둘 이상의 경우의 수가 없기 때문에 아래의 점수를 그대로 위로 올리면 된다[→ ㉮~㉲].

이 콘텐츠에 관한 저작권은 (주)이감에 있습니다.

➡ 그다음 상대방 ❷에서는 '가장 낮은 점수'를 위로 올려야 한다[문단4-3]. 이렇게 모든 괄호를 채우면 다음과 같이 된다.



∴ 결과적으로 현시점에서 컴퓨터는 점수가 가장 높은 ㉮를 택할 것이고[문단4-4], 게임의 경로는 ㉮-㉯-㉰로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①번 선지는 적절하지 않다. 틀렸다면 상대방 ❷에서는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점수가 가장 낮은' 수를 택할 것이라는 점을 놓친 탓이다.

➡ ⑤번 선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컴퓨터가 ㉦의 점수를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고 오해했을 수도 있다. '알파 베타 가지치기'는 상대방의 차례에서는 점수가 높은 경우의 수를 제거해야만 한다[문단5-3]. 그런데 여기서는 ㉥가 −1이기 때문에 ㉦는 ㉥보다 점수가 높을 수밖에 없어서, ㉦의 점수를 확인하는 절차조차 필요하지 않은 것이다. 이때 ㉦의 점수가 −1인 가능성을 고려했을 수도 있는데, 그것은 불가능하다. 틱택토의 특성상 상대방이 ㉥를 선택하여 컴퓨터가 '패'일 때에는, 또 다른 선택지에서도 컴퓨터가 '패'일 수는 없기 때문이다. 두 경우의 수에서 모두 컴퓨터가 −1일 수는 없으므로 최대 최소 알고리즘에서는 '가장 낮은 점수'나 '가장 높은 점수'를 정해서, 그것을 위로 올릴 수 있는 것이다[문단4].

[22~25] 현대소설

「관촌수필」

– 이문구 –

수록 지문 평가

근대화 과정에서 변화하는 농촌의 모습을 생생하게 담아낸 작품이다. 타인의 이야기를 전해 듣고 그것을 서술하는 지문의 특성상, 서술 시점의 파악에 혼란이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하며 읽도록 하자.

[앞부분의 줄거리] 고향을 방문했다가 농사꾼인 친구 신용모를 오랜만에 마주친 '나'는 역전에 있는 다방으로 함께 간다. 용모는 그곳에서 처삼촌을 만나 대화한 뒤 '나'가 있는 자리로 돌아오더니, 이웃집 소년이 잡은 꿩을 장날에 대신 팔아 주려다가 오늘 재판을 받게 되었다며 '나'에게 그 사연을 들려준다.

토막 ① 파출소에서 심문을 받는 용모

용모가 따라간 곳은 역전 거리에서 저만치 떨어져 있는, 농협과 은행 지점 옆에 자리한 파출소였다. 일요일임에도 장이 선 까닭인지 정복 순경이 둘이나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난로마저 신통찮아 바깥보다도 더 썰렁한 탓으로 용모는 팔꿈치가 시리고 무릎이 떨렸다.[→ 전지적 작가 시점의 서술처럼 보이는 대목이다.] 그는 시킨 대로 최 순경 책상 위에 주민등록증과 예비군 수첩을 내놓고 마주 앉았다. 본적 주소 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증번호 직업[→ 인적 사항에 해당하는 것들] 끝에,

"잡은 시간이 언제요?"[→ 용모가 꿩을 잡았다고 단정한 채 던지는 질문]

하고 물었다. 용모는 얼떨결에,

"아침 먹구 가 봤더라니께 아홉 시나 됐겄지유."

라고 대답했다.

➡ 최 순경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용모는 이웃집 소년에게 들은 대로 대답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남의 말을 옮기는 말투가 나왔다.

"덫으로 잡았다구 했소? 무슨 덫이오?"[→ 계속 용모를 추궁하는 최 순경]

"그런디 그게 말유……."

➡ 용모는 자신이 꿩을 잡은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다.

"묻는 말이나 대답해요.[→ 최 순경의 강압적인 태도] 쥐덫은 아닐 테구 무슨 덫이냔 말요?"

"글쎄 그것이 안 그렇단 말유."

"뭣이 안 그려? 덫은 몇 개나 있소? 전문으로 밀렵허려구 기구까지 준비하고 말여, 당신 악질이구먼. 그리고 이게 몇 마리째요?"

"에이 선생님[→ 상대방을 높여 이르는 말]두 참. 애매헌 말씀만 해 싸시네유, 안 그렇다는디두."

"당신 봐주려구 헐 때 들어요. 그게 쉬워요. 일을 어렵게 만들 거 없어요.[→ 괜히 혐의를 부인해서 일을 번거롭게 만들지 말자는 뜻이다.] 야생 조류, 야생 동물을 보호한다는 것은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말여……. [→ 용모의 행동이 명백한 위법임을 강조] 어린애들두 산에다 새집을 만들어다 달아 주고 하는데, 당신은 꿩만 잡은 것두 아닐 거요. 언제 무엇 무엇을 잡었으며, 무슨 방법으로 몇 마리 잡았다고 솔직히 말 않으면 재미없어. 오랫동안 집에 못 간다구. 최하 징역 유월[→ 육 개월]이여."

이 콘텐츠에 관한 저작권은 (주)이감에 있습니다.

"아이구 환장허겄네. 선생님두 아까 보셨을 거 아니유. 쬐끄만 애[→ 이웃집 소년]가 하나 안 따라왔더냔 말유. 그 애는 고학생이라구 우리게 한동네 사람 아들인디[→ 한동네에 사는 고학성의 아들인데], 그 애가 잡은 것을 말유……."

"그 애는 당신 아들이잖여—."

"어허— 그 애는 말유……."

"이 사람 정신 못 차리는구먼. 이따위가 있어 이거— 자기가 진 죄를 자기 어린 자식에게 덮어씔 참여? 뭐 이런 것두 있어…… 싸가지 없는 새끼, 야 너 좀 일어나 봐. 일어나……."[→ 폭력적으로 변한 말투]

소리와 함께 앉아 있던 용모는 얼굴을 천장으로 띄우면서 뒤로 나가떨어져 뒤통수를 바람벽에 이겨 붙였다.[→ 최 순경이 의자를 걷어차서 용모가 뒤로 넘어진 상황] 구두 뒤축이 허벅지를 찍더니 아랫배를 올라왔다가 옆구리를 제긴 다음 엉덩이를 까뭉기고 어깻죽지로 올라왔다[→ 구둣발로 용모를 폭행하는 최 순경] 논산 훈련소에서 맛보고 십몇 년 만에 받아 보는 대접이었다.[→ 전지적 작가 시점의 서술처럼 보이는 대목이다.]

➡ 용모를 회유하다가 점점 폭력적인 방법으로 용모를 제압하는 최 순경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다. 최 순경은 용모가 하는 말을 믿지 않고 있다. 조금만 알아보면 알 수 있는 일을 거부하고 있는 모습으로 볼 수도 있고, 용모가 하는 말의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이미 용모에게 죄를 씌우기로 마음먹은 상태일 수도 있다.

➡ 이 작품은 1인칭 서술자 '나'에 의해 서술되는 작품이지만, 수록 지문의 대부분은 '나'가 용모에게 전해 들은 이야기를 옮기는 구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마치 전지적 작가 시점의 서술처럼 보인다.

(중략)

토막 2 지인들에게 도움을 청했던 용모

최 순경은 저녁때가 다 되자 풀어 주면서, 반드시 수요일 13시 0분까지 순회 재판소의 법정으로 출두할 것을 지시했다. 용모는 풀려나오자마자 읍내에서 가 볼 만한 푸네기(= 가까운 제살붙이를 낮잡아 이르는 말)는 모두 찾아다녔다. 부조리 제거니 서정쇄신이니[→ 1970년대 당시 정부에서 전개한 개혁 운동이다.] 하고 아무리 떠들어도 돈만 쓰면 무마시킬 수 있을 것으로 믿은 거였다. 설령 벌금보다 돈이 더 든다더라도 법정 출두만은 면해야 되겠던 것이다. 그것은 실형이 떨어지면 법정 구속을 집행할 가능성도 남아 있기 때문이었다.[→ 용모는 구속되지 않기 위해 뇌물을 쓰려는 것이다.] 그러나 몇 군데 되지도 않았지만 장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십 원 한 장을 두를(= 없는 것을 이리저리 구하거나 빌리거나 할) 수가 없었다. 말로는 그렇게 안 해도[→ 대놓고 말은 안 했지만] 없는 것한테 어떻게 받으려고 돈을 놓겠느냐[→ 용모처럼 가난한 처지의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면 어떻게 돈을 받겠느냐]는 눈치가 역연하였다. 돈이 안 되면 최 순경을 만나 말이라도 좋게 해 달라고 갈급하게 매달렸으나 무가내였다[→ 소용없었다]. 평소 안면 있는 사람이 간곡하게 붙들고 늘어지면 서류[→ 용모의 위법 사실에 대한 서류]가 넘어가지 않을 성싶어 그랬던 것이지만 당장 자기네가 아쉽지 않으면 외눈 하나 잇긋하는[→ 꿈쩍하는] 자가 없었다. 3년째 여름 개장국 겨울 해장국을 하던 당숙은, 안 그래도 뜯기는 것 많아 문 닫히겠다며 고개를 저었고 자동차 부속 가게를 하는 이종도 마찬가지였다. 그런 자잘한 신세[→ 용모가 법정에 서는 일을 막기 위한 청탁]를 미리 지면 나중에 정말 무슨 일이 생겨서 급할 때는 못 써먹게 된다는 거였다. 신문 지국장을 하는 처삼촌도 다를 것이 없었다. 만나서 이야기를 해 보마고, 재판받는 날 역전 다방으로 나오면 결과를 알 것이라더니, 만나니까 오히려 용모더러 참으라고 타이르던 것이다.

"이왕 넘어간 것, 별 수 없으니 곱게 참구 판사 앞이서 허튼소리나 말어. 최 순경허구 나허구는 종씨 간이구, 서로 그럴 처지가 아니거든. 쬐끔이라두 틀리면 피차 곤란헌 입장이니께 나를 봐서라두 벌금이나 물구 말어."

➡ 재판에서 괜히 혐의 사실을 부인하지 말고 잠자코 혐의를 시인하면 벌금형 정도가 떨어질 것이라는 뜻을 담은 설득이다.

토막 3 용모를 보는 '나'

용모는 가죽점퍼와 안경알만 번쩍거리다가 부군수와 만난다며 찻값도 안 내고 나간 사내[→ 처삼촌]의 말투를 시늉해 보이고 나서 체념한 얼굴을 했다.[→ 여기서부터, 눈앞에 함께 앉아 있는 용모에 대한 서술자 '나'의 서술이다.] 처삼촌 얼굴을 봐서가 아니라 자기 앞날을 위해서 참아야 할 것 같다는 거였다. 재판정에서 진술을 뒤집으면 앙갚음이 있을는지 몰라 두려운 모양이었다.[→ 용모의 내면 심리에 대한 서술자 '나'의 추측이다.] 좁은 바닥에 살자면 누구하고 혐의지거나 유감을 품고 살 수가 없다는 것이 용모 의견이었다.

➡ 용모가 전해 주던 이야기에서 빠져나와, 서술자 '나'가 현재의 상황을 서술하는 대목이다.

이 콘텐츠에 관한 저작권은 (주)이감에 있습니다.

[26~30] 고전시가

(가) 「봉선화가」

– 작자 미상 –

수록 지문 평가

조선 시대 여인들에게 친숙한 봉선화를 소재로, 규방에서 꽃을 키우며 지내던 여인들의 처지와 정서를 차분하고 담담한 목소리로 담아낸 작품이다.

규방(閨房)에 일이 없어 백화보(百花譜, 온갖 꽃에 대한 설명을 쓴 책)를 펼쳐 보니

봉선화(鳳仙花) 이 이름을 뉘라서 지어 낸고

➡ 봉선화라는 이름을 누가 지은 것인지 묻고 있다. 이 뒤로는 봉선화라는 이름의 유래에 대한 '백화보'의 설명을 담은 진술이 이어진다.

신선(神仙)의 옥소(玉簫) 소리 선계(仙界)로 떠난 후에

→ 신선이 부는 옥피리 소리가 신선의 세계로 사라진 후에

규중에 남은 인연 꽃가지에 머무르니

➡ 신선 세계로 가면서 남긴 인연이 바로 봉선화 한 가지가 되었다는 뜻이다. 봉선화와 관련하여, 신선 세계로 갔다는 '농옥(弄玉)'의 고사에 대해 말하고 있다.

참고 농옥은 중국 춘추 시대 진나라 목공의 딸로, 퉁소를 잘 부는 '소사(蕭史)'와 결혼한 뒤 그에게 퉁소를 배워 봉황의 울음소리를 낼 수 있을 만큼 잘 불게 되었다. 퉁소 소리에 이끌린 봉황과 더불어 몇 년을 지내던 부부는 어느 날 봉황을 타고 하늘로 날아갔다고 한다. 이 고사와 관련하여, '봉선화(鳳仙花)'라는 이름의 '봉(鳳)'은 농옥 부부가 타고 떠난 봉황을, 선(仙)은 신선 또는 선녀를 가리킨다고 이해할 수 있다.

유약한 푸른 잎은 봉(鳳)의 꼬리 넘노는 듯

→ 부드럽고 여린 푸른 잎은 봉황의 꼬리가 넘노는 듯

자약히(= 침착하게) 붉은 꽃[→ 봉선화]은 선녀의 치마 펼쳤는 듯

➡ 비유와 대구를 활용하여 봉선화의 잎 모양과 꽃 모양에 대해 말한 부분인데, 이 부분도 '백화보'의 설명을 따온 것으로 볼 수 있다. '봉선화'라는 이름이 그것의 잎 모양[→ 봉황의 '봉']과 꽃 모양[→ 선녀의 '선']에서 유래되었다는 것이다.

흰 섬돌(= 집채의 앞이나 뒤에 오르내릴 수 있게 놓은 돌층계) 앞 깨끗한 흙에 띄엄띄엄 심어 내니

춘삼월이 지난 후에 향기 없다 웃지 마소

➡ 봉선화는 향기가 없다. 그래도 비웃지 말라는 것이다.

취한 나비 미친 벌이 따라올까 염려함이네

➡ 봉선화에 향기가 없는 이유를 취한 나비와 미친 벌이 올 것을 꺼린 탓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정숙한 그 기상을 여자밖에 뉘 벗할꼬

➡ '취한 나비'와 '미친 벌'이 꼬이지 않도록 하려고 향기가 없는 것이라면, 봉선화는 외간 남자를 멀리하는 정숙한 여인에게 어울리는 벗이 된다고 이해할 수 있다.

옥난간(玉欄干) 긴긴 날에 보아도 다 못 보아

→ 옥난간에서 [섬돌 옆의 봉선화를] 하루 종일 보아도 다 못 보아

➡ 하루 종일 보아도 성이 차지 않는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다.

사창(紗窓, 비단 창)을 반쯤 열고 계집종을 불러내어

➡ '계집종'을 부르는 것으로 보아, 화자가 사대부 가문의 여인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

다 핀 꽃을 캐어다가 수(繡) 상자에 담아 놓고

➡ 봉선화 물들이기를 준비하는 모습이다. 먼저 재료인 봉선화 꽃잎을 담고 있다.

바느질을 그친 후에 안채에 밤이 깊고

촛불이 밝았을 때 차츰차츰 곧추앉아

➡ 하루의 일을 마친 밤에 봉선화 물들이기를 하려는 것이다. 봉선화 물들이기는 보통 밤에 해서 다음 날 아침에 확인한다.

백반 갈아 바수어 빙옥(氷玉) 같은 손 가운데 흐드러지게 이겨 얹으니

➡ 백반을 갈고, 백반과 봉선화 꽃잎을 짓이겨 그 반죽을 손톱 위에 얹었다는 것이다.

파사국(波斯國, 산호의 산지로 알려진 '페르시아'의 옛 이름) 임금의 홍산호(紅珊瑚)를 갈아 낸 듯

→ 페르시아 임금의 붉은 산호를 갈아 놓은 듯

깊은 궁궐 절구에 홍도마뱀 빻아 놓은 듯

→ [울긋불긋 반죽된 봉선화가] 깊은 궁궐에서 절구에 붉은 도마뱀을 빻아 놓은 듯

➡ 반죽한 봉선화의 빛깔이 붉은 산호만큼 화려하고 곱다는 뜻이다. '홍산호'와 마찬가지로 '홍도마뱀'도 손톱 위에 얹은 반죽의 색감을 비유적으로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가늘고 고운 열 손가락에 수실로 감아 내니

➡ 이제 손톱에 얹은 봉선화 반죽을 동여매는 단계다.

종이 위에 붉은 물이 미미(微微)하게 스미는 양

가인(佳人)의 옅은 뺨에 홍로주(紅露酒)를 끼쳤는 듯

→ 미인의 얕은 뺨에 홍조가 어리는 듯

➡ 동여매 놓은 봉선화 반죽에서 손톱을 싼 종이로 붉은 물이 스며들어 비치는 모양을, 미인의 흰 뺨에 홍조가 어리는 모습에 비유했다.

단단히 봉한 모양 춘라옥자일봉서(春羅玉字一封書, 비단에 옥으로 글씨를 박아서 봉한 편지)를 왕모(王母, 중국 신화에 나오는 선녀인 서왕모)에게 부쳤는 듯

➡ 손톱에 봉선화 반죽을 올려 단단히 묶은 모양이, 마치 서왕모에게 부치려고 비단에 옥으로 글씨를 박은 편지를 소중하게 봉해 놓은 것 같다는 뜻이다.

(중략)

은근히 풀을 매고 돌아와 누었더니

녹의홍상(綠衣紅裳) 한 여자가 홀연히 앞에 와서

➡ 이어지는 내용으로 볼 때, '한 여자'는 실제 여인이 아니라 봉선화 '꽃 귀신'이다.

웃는 듯 찡그리는 듯 사례(謝禮)하는 듯 하직(下直)하는 듯

➡ '한 여자'는 말이 없는데, 웃는 것 같기도 하고 슬퍼하는 것 같기도 한 그 표정이 마치 그동안 고마웠다는 인사를 하는 것도 같고 이제 떠난다고 슬프게 인사하는 것도 같다는 말이다.

몽롱히 잠을 깨어 곰곰이 생각하니

아마도 꽃 귀신이 내게 와 하직한 듯

➡ 이제 봉선화 꽃이 질 때가 되었기에 꽃 귀신이 작별 인사를 하러 온 것이 아닌가 생각한 것이다.

방문을 급히 열고 꽃 수풀을 살펴보니

땅 위에 붉은 꽃이 가득히 수놓았다

➡ 꿈에서 깬 화자는 황급히 창문을 열어서 꽃밭을 확인해 봤지만, 이미 꽃잎은 다 져 있다.

암암히(= 속이 상하여 시무룩하게) 슬퍼하고 낱낱이 주워 담아 꽃에게 말 붙이되

그대는 한(恨)치 마소

➡ 화자는 봉선화를 청자로 삼아 말을 건네고 있다.

이 콘텐츠에 관한 저작권은 (주)이감에 있습니다.

세세연년(歲歲年年)에 꽃 빛은 의구(依舊)하니

→ 해마다 꽃 빛은 변함이 없으니

하물며 그대 자취 내 손에 머물렀지

➡ 꽃은 졌지만 내년에도 후년에도 계속 꽃을 피울 테고, 화자 자신의 손에 그 자취가 남아 있으니 너무 슬퍼하지 말라는 것이다.

동원(東園)의 도리화(桃李花)는 짧은 봄을 자랑 마소

→ 동원의 복숭아꽃과 자두꽃은 잠깐의 봄을 자랑 마소.

이십번 꽃바람(= 봄이 끝나 감을 알리는 바람)에 적막히 떨어진들 뉘라서 슬퍼할꼬

➡ 규방 섬돌 앞의 봉선화는 이미 졌는데, 동원의 도리화는 피어 있는 상황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화자는 도리화 역시 곧 질 것이며, [봉선화가 지는 것에 자신이 슬퍼하는 것과 달리] 도리화가 지는 것에 슬퍼할 사람은 없다는 뜻으로 말하고 있다.

규중에 남은 인연 그대 한 몸뿐이로세

➡ '봉선화'라는 이름의 유래를 생각하던 여성 화자는 그 아름다운 모습과 깨끗하고 고요한 성품을 예찬하며 여자만이 참된 벗임을 노래한다. 아울러 봉선화 꽃물을 들이는 과정을 서술하고 물든 손톱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가운데, 손톱 끝에 물든 채 적막한 처지의 여인들과 언제나 함께하는 봉선화야말로 규중 여인들의 진정한 인연임을 재확인하고 있다.

이 콘텐츠에 관한 저작권은 (주)이감에 있습니다.